

지방자치단체

2023년도 주요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과제

2023. 2.



국민권익위원회

순서

I.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성과 및 여건	1
1. 우리나라 청렴수준에 대한 대내·외 평가 개선	3
2. 2022년 국민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주요 성과	5
3. 2023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여건	8
II. 2023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9
1.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12
2.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근절 추진	14
3. 생활 속 규범으로 반부패 행위규범 내재화	16
4.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25
5.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내실화	29
6.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도 향상 촉진	31
7.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공직사회 청렴역량 강화	36
8.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등 자율적 청렴활동 지원	40
9. 촘촘하고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41
10. 부패행위 등 적발·처리의 실효성 강화	43

순 서

Ⅲ. 협조사항	45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47
[참고자료]	49
1. 2023년 자치법규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 현황	51
2.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유의 사항	53
3. 이해충돌방지법 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이행 관련 안내	62
4. 청렴연수원 개발 최신 콘텐츠 목록	63
5. 2023년 청렴연수원 교육 일정	64
6. 부패·공익신고 창구 개선 협조 요청사항	67
[붙 임]	73
1.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요약표	75
2. 부서별 업무담당자	80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 성과 및 여건

I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성과 및 여건

1. 우리나라 청렴수준에 대한 대내·외 평가 개선

□ [대외] 국가청렴도(CPI) 및 각종 반부패 지수 지속 개선 추세

- 지난 1월 31일 발표한 '22년도 국가청렴도(CPI)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1점↑), 180개국 중 31위(1위↑)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6년간 지속 상승 추세로,

'22년에는 평가 이래 역대 최고 점수와 등수 기록

- 최근 공공청렴지수(IPI)*와 뇌물위험메트릭스(BRM)** 등 주요 국제 반부패지수도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등 개선 추세 뚜렷

* 사법제도의 독립성, 시민참여 및 언론자유, 행정·예산·시장의 부패가능성 통제 수준을 평가

** 전 세계 기업활동을 원하는 기업인 대상 경영인에 대한 뇌물 요구 가능성을 평가



< 공공청렴지수(IPI), ERCAS, '22.1. >



< 뇌물위험메트릭스(BRM), TRACE, '22.11. >

- 우리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노하우 등 전수 요청도 증가

※ 국민권익위의 국민참여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이 우수사례로 소개('22.11.16., G20 정상회의 선언문 부속서)

□ [대내] 우리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 움직임

- '22년 부패인식도 조사('22.12월, 국민권익위) 결과, 우리사회 전반과 공직 사회의 청렴수준 및 우리사회 전반의 공정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개선

〈 '22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단위 : %, %p)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부패하다' 응답	우리사회 전반	54.4(↓ 6.5)	36.0(↓ 19.0)	39.0(↓ 10.7)	13.5(↓ 17.3)	8.0(↓ 0.7)
	공직사회	38.6(↓ 11.2)	29.6(↓ 34.2)	33.7(↓ 11.2)	11.8(↓ 18.0)	3.3(↑ 0.4)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 응답		50.4(↓ 5.1)	32.0(↓ 29.3)	52.1(↓ 4.9)	19.5(↓ 15.8)	16.4(↓ 3.1)

* 괄호 안은 전년 대비 변화(개선) 수준(%p)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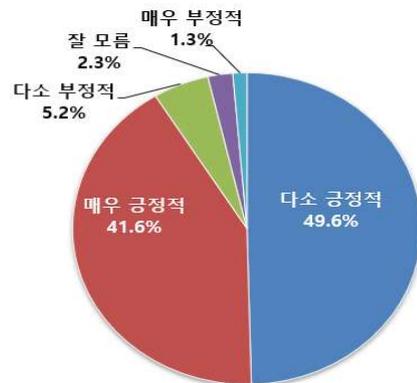
- 또한, 국민·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최근 구축된 반부패 법령과 제도가 대체로 효과적이고, 국민·공직자의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

-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91.2%

※ 국민생각함('22.11.7.~18.)을 통해 4,482명의 국민(공직자 9.4% 포함)이 조사에 참여

- 공직자의 82.5%, 일반국민의 68.4%가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해충돌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

※ 국민·공직자 3,045명 대상 인식조사('23.1월, 국민권익위)



-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전통적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도 전년에 비해 개선

* 공무원에게 금품제공 행위가 보편적이라는 응답 : ('21년) 37.0% → ('22년) 25.2%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대한 연구, '23.1월, 행정연구원)

**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들의 금품(0.15% → 0.13%)과 향응(0.16% → 0.10%) 관련 부패 경험률도 다소 감소('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3.1월, 국민권익위)

2. 2022년 국민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주요 성과

□ 반부패 정책 기반 공고화

- **(법령 정비)** 반부패 법률 개정 사항 반영해 시행령 개정·시행
 -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 등 법률 개정('21.12.)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시행('22.7.)
 - (부패방지권익위법) 법정 청렴교육의무 이행관리 강화*, 비위면직자 적용대상 확대 및 취업제한 안내 의무화 등 관리 강화('22.7. 시행)
 - * 전년도 교육이수 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및 이행계획서 제출·관리 등
- **(제도기반 구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후 체계적인 준비와 제도 운영으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공정채용 정책의 국정 과제(91-1번) 반영으로 반부패 정책 추진 역량 보강

< 이해충돌방지 정책 추진 현황 >

구분	주요 내용
하위규범 등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령('21.12월), 운영지침 표준안('22.2월), 신고사무처리지침(4월), 업무편람(4월), 고위공직자 민간내역 신고 안내(7월) 등 규범·기준·편람 적극 마련·제공
유권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 이후 공문, 국민신문고, 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기관별 유권해석 요청 적극 대응(894건 접수, 686건 답변 완료, '22.12월 기준)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법 제정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 실시('22.12월 기준 495개 기관), 권역별 설명회*, 연수원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빈발 질의·답변 등을 포함한 유권해석 사례집, 국공립 학교 맞춤형 소책자 등 제작·배포('22.12월) * '22년 상반기(4월) 총 12회(2,142개 공공기관 대상) 개최, 하반기(10~12월)에는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과 연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워크숍 추진 ▪ (홍보) 법 제정 이후부터 시행 전·후로 법 제정 의의와 시행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보도자료, 라디오·일간지·TV 공익광고 홍보, 언론 인터뷰, 유명 연예인 등 참여 영상 송출, SNS 이벤트, 홍보 리플릿 배포, 옥외전광판 홍보 등
실태 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 첫 해, 각급 기관의 제도운영 현황과 제도 보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법 적용 대상기관 전수 실태점검 추진('22.9~12월) ▪ 제도의 효과성·인지도 관련 국민·공직자 대상 인식조사(~'22.12월)

- (정책 평가 강화) 법령 중심의 부패영향평가를 자치법규와 사규까지 확대해 부패요인을 사전 발굴·차단하고,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으로 일선 현장의 반부패 노력 촉진

* 이해관계자 설문(체감도), 부패사건 현황(부패실태)과 기관별 반부패 노력 성과 (노력도)까지 종합 평가하고, 기초자치단체 전수 평가('21년 42개 평가) 등 대상 확대

< 법령·규정 등 부패영향평가 성과 >

유형	주요 내용
제·개정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34개 법령을 평가해 134개 법령(320건) 개선 권고('22.11월 기준)
공공기관 사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년에 걸친 공공기관(총 506개 대상) 사규 전수점검 마지막 해로, 공운법상의 220개 기타공공기관의 21,328개 사규를 전수 점검해 총 235개 개선과제(2,250건) 개선 권고 * 공공기관의 부패예방(80.2%) 및 소속 임직원의 청렴수준 향상(66.9%)에 긍정적으로 기여(3개년 점검 시행 공공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22.12월)
지방 자치법규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선 현장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훈령 등 지방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7월~) - '22년에 79개 기초자치단체의 46,917개 자치법규를 평가해 85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1,974건의 개선권고(12월) - 이와 함께 행정편의, 진입장벽, 주민 권리·의무 제한 관련 등 10개 규제혁신 과제와 13개 세부 개선사항을 발굴해 지자체 통보

□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 (취약분야 점검) 지방분권 강화, 지방선거로 부패 가능성이 높은 지방 현장의 반부패 제도 운영 실태 집중 점검

-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제도운영 종합 점검과 '21년 청렴교육 운영실태 점검 실시(2~5월)

※ (청탁금지법) 법 시행('16.9.) 이후 '21년까지의 제도운영 현황 점검 (행동강령) '18.7.~'21.12. 기간 중의 행동강령 규정 및 제도운영 현황 점검

☞ 지자체 외에도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금지·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실태, 중앙행정기관 등 308개 기관의 공공재정 누수 현황,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실태 전수조사, 가상자산 유관기관 대상 가상자산 공직 윤리 제도 현황 등을 다각도로 점검

- **(교육 내실화)** 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11월), 공정채용·이해충돌방지 등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즉각적 교육 지원
- **(정책 소통 강화)**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중점 추진 현황과 성과를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 인식 제고
 - ※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라 국제 평가기관 방문 설명(상·하반기 총 2회), 주한 외국상의 간담회(총 7회) 등 국가청렴도 관련 대면 홍보 강화

□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제도 정비)** 공익신고에 적용되던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부패신고까지 확대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22.7월)
 - * 신고자 위법행위 징계·행정처분 감경·면제 요구 근거 신설, 포상금(2억원 → 5억원) 및 구조금(지급 사유 확대, 긴급구조금 제도 도입 등) 확대
- **(신고활성화 유도)** 보조금 부정수급 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보·포상금 적극 지급** 등으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숨겨진 부패·공익침해 행위 적극 발굴·조치
 - *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건은 직전 3개월 대비 18.3% 증가, 총 344건 부정수급 적발(149억원 이상 환수 결정 및 115명 검찰 송치)
 - ** 보상금 55억 8천만원(전년대비 27.9% 증), 포상금 5억 7천만원(159.1% 증) 지급
- **(처벌·관리 강화)**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사건 적극 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 위반자 처벌 강화 등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 전체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건수 중 보호 인용률은 62.9%로 전년대비 10.2%p 향상
 - 신고자 신분공개자 및 불이익조치자는 검찰 고발(8건)하고,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자 이행강제금을 부과(7건, 1억 7천만원)하는 등 위반자 엄정 처리

3. 2023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여건

□ 정부 2년차, 국가청렴도 지속 향상을 위한 역량 집중 필요

-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일상회복, 자연·산업재해 대응, 4차 산업혁명 고도화, 새정부 출범 등 정치·행정·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시기 경험
 -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안정적 정책 추진과 경제 활성화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기 위한 추진동력 확보 필요
- 국가청렴도(CPI) 등 각종 국제 반부패 지수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었으나, 향후 상승 추세의 지속가능성 불투명
 -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국내·외 반부패 정책 추진·대응 필요

⇒ 반부패 법령·제도를 국민 생활 속에 내재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 창출

□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 요구

-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국가청렴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과 청렴·공정 사회 확립이라는 정부 목적 달성에 한계
 - 공공부문 부패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민간 접점의 부패와 민간 부문 부패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 필요
- 공공재정 누수·낭비 해소, 공익·부패 신고 활성화를 통한 공공·민간의 숨겨진 부패 타파 등 공공·민간의 부패·공익침해 방지제도 지속 발전·강화 필요

⇒ 공공·민간 접점 부패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와 실태 점검·관리 지속 강화



**2023년도
반부패 · 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II

2023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비전

청렴과 공정의 DNA로, 반듯한 대한민국

목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전략

생활 속 규범으로
법·제도 내재화

수요자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

국민과 함께
청렴정책 고도화

정책 방향	정책 과제
① 반부패 법·제도 내재화 및 부패 취약분야 발굴·개선	①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②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근절 추진
	③ 생활 속 규범으로 반부패 행위규범 내재화
	④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⑤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내실화
②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⑥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도 향상 촉진
	⑦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공직사회 청렴역량 강화
	⑧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등 자율적 청렴활동 지원
③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로 '숨은 부패' 적극 해소	⑨ 촘촘하고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⑩ 부패행위 등 적발·처리의 실효성 강화

1.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관문인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 공정채용 전담기구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 (전담기구 신설) 상시·종합적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출범('23.1월)

* 국정과제(91번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반영으로 기존의 임시·한시 조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확대·개편

□ 2023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추진

○ (전수조사)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22년 채용과정*' 적정성 여부 점검

* '22.1.1~12.31. 기간(채용공고일 기준) 중 각 기관에서 실시한 신규채용 과정 대상

※ 최근 3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징계'를 포함한 처분이 없었던 기관은 재량조사 가능(경영평가 대상 제외)

- 필수조사* 대상 : 총 420개 기관, 재량조사** 대상 : 총 944개 기관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 대상,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시 '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 발생기관 및 '22년도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시 적발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채용절차 위반이 지적된 기관 등

○ (후속조치)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및 피해자 구제, 부정합격자 퇴출 등

- (비리 연루자) 수사 의뢰 즉시 업무 배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조치

- (피해자) 다음 채용단계에 대한 재응시 기회 부여 등 피해자 적극 구제

- (부정합격자) 채용비리 직접 가담자에 해당 시, 기소 즉시 퇴출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마련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 해소

- (제도마련)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 마련·적용(1분기)
 - 채용계획 수립부터 피해자 구제 등 사후관리까지 개별 채용 절차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17개)에 대한 표준 규정(안)을 제시
- (실태조사) '공정채용 기준 이행 실태조사' 등을 통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채용 관리체계 마련(하반기)
 - '공정채용 기준' 적용 이후,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기준에 대한 준수여부 점검 등 관리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23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전수조사 후속 조치(비위 연루자 제재, 피해자 구제 등) 및 제도개선 적극적 이행 및 점검 협조
-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 적극 이행 협조(전 행정기관)
 - ※ '23년 1분기 내 기준 마련·적용 추진, '23년 하반기 자체규정 이행실태 점검 예정
-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시 자료제출·현지점검 등 적극 협조(해당기관)
 - 채용비리 의혹 신고사건 조사기관 송부 시, 신고자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 실시 및 권익위로 조사결과 통보 등 협조

2.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근절 추진

- ◇ 공공재정의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근절 추진

□ 공공재정 부정수급 총괄 관리기능 강화

- **(이행실태관리 점검)** 중앙행정기관 등 308개 공공기관 대상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 관리실태 점검
 - 이행실태관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부가금 미부과 등 제재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후속점검 실시
- **(취약분야 집중점검)** 부정청구 빈발분야, 유사사례 발생 가능 분야 등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정부합동점검 등 집중점검 실시
- **(자체점검 강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조치 자체점검 실시
 - ※ ‘기관별 자체 점검노력’을 ’23년 청렴도 평가에 반영 추진

□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컨설팅 추진

- **(법령 개정)**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추진 (’23.1월, 국회 제출)

< 개정안 주요 내용 >

- ① (대상) 국·공립학교를 부정수익자에서 제외
- ② (면제·감면) 오지급 환수 시 이자 면제, 행정청 인지 후 자진신고 시 감면규모 축소
- ③ (보호·보상) 구조금 신청근거 마련, 보상금 신청기한 규정,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보상금 상환제도 신설
- ④ (적발·처벌)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 **(통합관리 시스템 개편)** 제재처분 현황을 사업부서에서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상시입력체제로 개편 추진(하반기)**
 - ※ 총괄부서에서 취합·입력(반기별)하는 현 체계의 자료누락 가능성 등 방지
- **(컨설팅 강화)**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대상기관을 선정해 **1:1 맞춤형 컨설팅 실시**
 - ※ '22년도에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24개 기관), '23년도에는 희망기관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고려해 대상기관 선정 예정

[협조 요청 사항]

- 원활한 이행실태점검을 위해 제재처분에 대한 부정청구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철저(**전 공공기관**)
 -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체납처분, 명단공표 등
- 후속점검을 위한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해당 기관**)
- 취약분야 합동점검 적극 참여(**해당 기관**)
 - 권익위에서 취약분야 합동점검 요청 시 적극 참여 협조
- 기관별 자체점검 적극 참여
 - 공공재정지급금 집행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전 공공기관**)
- 컨설팅 적극 참여 요청(**해당 지자체**)
 -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컨설팅 적극 참여 요청

3. 생활 속 규범으로 반부패 행위규범 내재화

1.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시행

- ◇ 운영상 개선사항 및 명확한 해석기준 제시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 실태조사 및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 안내

- (업무편람 배포) '22년 실태조사에 따른 기관별 제도운영 개선 사항 안내 및 주요 유권해석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령 해석 기준 제시(~4월)

< 안내 사항 주요 내용(안) >

- 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보완 요청 판단의 구체적 기준
- ② 산하기관 등에 당연직 임원으로 재직하는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완화
- ③ 승진·평가 등 직무 수행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발생 기준 명확화

- (법령정비) 법 해석의 명확성, 공직자 행위기준간 통일성,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추진(5월~)

* '22년 실태조사 결과, 국회·언론 지적사항, 의원발의 개정안, 유권해석 사항 등 반영

□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운영

- (유권해석) 각급 기관의 법 해석·적용 및 신고사항 조치 관련 해석 요청에 대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통일된 해석기준 제시(연중)

※ 쟁점사항은 반부패규범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해석 기준의 합리성 제고

- (실태조사) 각급 기관의 행위기준별(수의계약 제한, 가족채용 제한 등) 제도운영 현황 조사 실시(9~12월)

- (신고처리)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법 위반신고의 신속·공정한 조사·처리(연중)

□ 교육·홍보를 통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내재화

- (교육)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높이고, 법에 따른 행위기준을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 실시
 - (맞춤형 교육) 중앙부처·지자체·지방의회·공직유관단체 등 기관 유형, 교육 수요자의 권한범위, 직무특성 등을 반영한 직접교육 실시(연중)
 - (권역별 설명회)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대상 제도 개선사항 안내 및 유의사항 공유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워크숍·설명회 개최(6월)
- (홍보) 법 인지도와 규범성 제고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전략 홍보
 - (공직자) 의무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유형별 유권 해석 및 법 위반신고 사항을 담은 사례집, 리플릿 등 발간(10~12월)
 - (국민) 공직자에 대한 법 위반행위 신고 등 국민의 견제·감시 역할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국민 참여 홍보(연중)

※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 이슈 계기별 다 매체 활용 국민 참여 이벤트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22년 실태조사에 따른 시정 조치 통보 사항의 조속한 이행(해당 기관)
 - 법 위반 사항 후속 절차 진행,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 제도운영 미흡 사항 개선 조치 후 결과 통보(~6월)
- 이해충돌방지법 법정 의무 교육 이행(전 공공기관)
 - 소속 공직자들이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권익위에 지원 요청
-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적극 참여(전 공공기관)
 - '2023 업무편람'에 새롭게 반영된 사항의 교육·안내를 위해 개최하는 권역별 설명회 참여(6월 예정)
- 공직자의 수범성 제고를 위한 자체 점검 등 이행 노력 전개(전 공공기관)
 - 부패 취약 시기 또는 정기적으로 소속 공직자의 의무 이행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 신고 빈발분야 재발 방지 노력 등 전개
- 국민권익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하는 경우,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등 협조(해당 기관)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법 제18조)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협조(전 공공기관)
 -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이행 및 조치 현황, 제한·금지 의무 관리 현황, 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현황 등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협조(9~11월)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전 공공기관)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팀 (전화) 044-200-7674, 7679, 7681

(메일) tethr17@korea.kr, csy1009@korea.kr, nars@korea.kr

2.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 ◇ 법령 및 유권해석 기준 현실화를 통한 규범력 제고
- ◇ 실태점검 및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로 자율적 법 준수 노력 촉진

□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및 합리적 해석기준 정립

-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

< 주요 개정 추진사항(안) >

- ①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공공기관의 인사' 명시
※ 송재호의원 발의안('21.9.) 정무위 계류 중
- ②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 도입
- ③ 청탁금지제도 운영 관련 자료제출 요구 근거 명확화
- ④ '음식물' 등 가액범위 재검토 기한(예 : 5년) 규정
- ⑤ '선물'의 범위에 기프트콘 등 유가증권 포함(시행령)
※ '22년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4%가 찬성 의견

- (해석기준)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불명확한 유권해석 기준을 전문가 자문 및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재정립

< 유권해석 기준 검토 대상(예시) >

- 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구체화
- ② 공식적 행사 등 판단 기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의 허용 기준
- ③ 공무수행사인 인정 범위, 최신판례를 반영한 '상급 공직자', '동일인' 개념
- ④ 방송사업 운영 민간기업 직원의 공직자 등 인정 범위

□ 각급 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 유도·지원

- 언론보도·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신고 부적절 처리 기관, 제도운영 미흡기관 등에 대해 상시 점검·개선 요구(수시)

※ 정기 실태점검 전 즉각적 시정으로 온정적 처벌 방지 등 통제체계 정비

- 위반 신고 빈발 기관, 유권해석 질의 다수 기관 등을 선정(예:상위 10개 기관)하여 **현장점검 및 제도운영 컨설팅** 등 실시

※ 각종 협찬·기부, 해외출장 지원, 외부강의 등 질의 빈발 사안에 대한 우수 운영사례 및 제도개선 사례 등 발굴·전파

□ 법 준수인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

- **(공직자등)** 기관 유형별 빈발 위반행위, 수사의뢰·과태료 부과 요청 절차 등 **세부 신고처리 방법**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

※ (공공기관) 유형별·권역별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교육(상·하반기)

(언론)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기자협회와 협업하여 언론인 청탁금지법 교육과정 확대 및 청탁방지담당관 맞춤형 교육 실시(수시)

- 유권해석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권해석DB***, 판례 등을 유형·분야별로 홈페이지에 게시(반기별)하여 각급 기관의 사안별 대응력 제고

* 공공기관 유권해석 요청, 국민신문고 및 홈페이지 질의·답변 등 약 2만 6천건

- **(일반국민)** 명절 등 주요 계기별 청탁금지법상 허용범위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해소

※ 카드뉴스, 보도자료, 언론 인터뷰 등 활용한 다각적 홍보 추진

홍보 내용(예시)	추진시기
• 설 명절 선물 관련 유의사항, 가액상향 시기 등	1월
• 졸업·입학, 스승의날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2~3월, 5월
•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기관 현지점검 결과	6월
•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유의사항	9월
• 부정청탁, 금품등수수, 외부강의 관련 주요 판례 카드뉴스	수시

[협조 요청 사항]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협조(전 공공기관)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 제도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점검 시 자료 제출(2월~) 및 현지 방문 협조(4월)
 -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 교육·홍보 적극 참여 요청(전 공공기관)
 - (교육) 상반기 온라인 교육(2월), 하반기 오프라인 교육(10월) 예정
 - (홍보) 설·추석, 스승의 날 등 특정 시기와 연계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홍보자료(카드뉴스, 홈페이지 배너 등) 적극 활용 협조(수시)
 -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홈페이지* 활용 요청(전 공공기관)
 - 법 적용대상, 금품수수, 외부강의 등 유형별·분야별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키워드 검색 가능(최신 유권해석 사례 지속 게시 예정)
- *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3.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내실화

- ◇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자율적 이행 노력 유도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행위기준 재정립

□ 기관별 행동강령 제도 운영 내실화

- (공직유관단체 내규 점검) 공직유관단체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 현황 등 전수조사를 통한 갑질 금지 규정 신설 등 내규 정비 지원
 - ※ ('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권익위가 공직자 행동강령 총괄기관으로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내 행동강령 표준안 반영 등 실태조사·점검할 필요
- (행동강령 제정 지원) '23년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지원을 통해 행동강령 이행기반의 조속한 구축
 - ※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 설명회 등을 통해 행동강령 제도 운영 역량 강화
- (행위기준 개선) 공공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워크숍, 업무담당자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행동강령 제도 운영 보완사항 발굴·개선
 - ※ 행동강령 개념이 모호하거나 규정 적용상 어려움이 있는 행위기준에 대해서는 업무편람 등을 통해 해석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령 적용력 제고
- (이슈 선제 대응)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행동강령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해석기준, 위반사례 등을 즉각 전파
 - ※ (예시)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이 이슈화될 경우, 예산 목적외 사용 관련 행동강령 해석기준·위반사례를 보도자료·SNS 등을 통해 전파

□ 취약분야 테마별 행동강령 이행점검 강화

- (취약분야) 공직자 특혜·유착 등 행동강령 위반 개연성이 높거나, 갑질 등 불공정 관행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한 행동강령 실태점검
 - ※ (예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행사 입장권, 지역특산물 등에 대한 매매를 강요·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갑질 관행 점검

- **(취약기관) 청렴도 평가 저조기관, 그간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 점검 미 실시 기관 등을 중심으로 예방적 실태점검 실시**
 - ※ (예시) 상대적으로 청렴도가 낮은 유형인 국공립대학(교수·연구원 등의 연구비 부당 사용, 학사업무 관련 불공정 계약 등), 최근 행동강령 점검 미 실시 기관으로서 교육청(학교보조금 등 예산 목적 외 사용 등) 등
- **(취약시기) 설·추석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를 전후하여 행동강령 이행실태 집중 점검**
 - ※ 언론 등을 통한 행동강령 위반 이슈 제기 기관, 행동강령위반 신고 빈발 기관, 청렴도 평가 하위기관, 부패행위 발생 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협조 요청 사항]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개정 현황 등 전수조사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 적극 협조(공직유관단체 소관 감독 공공기관)**
 - 공직유관단체 소관 감독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 등 관련하여 누락되는 공직유관단체 발생 방지
 - ※ 소관 공직유관단체 대상 자료 작성 안내 및 자료 취합 등 적극 협조
-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 권익위로 제출(전 공공기관)**
 -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이 완료될 경우 ① 자체 행동강령 개정 전문, ② 신·구 조문대비표를 공문으로 송부
 - ※ 권익위에서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이 통보되는 기관은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에 시정·권고사항 신속히 반영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운영 지원 설명회 참석 협조(해당기관)
 - ※ 행동강령 제정·운영 지원 설명회 세부 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3월, 9월)
- 권익위에서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 행동강령 실태점검시 자료 제출·현지점검 등 협조(해당기관)
 -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기관 송부시 신고자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 실시 후 권익위로 조사결과 통보 등 협조
 - 실태점검시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해당 관계기관은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제도개선 검토 등 협조
- 기관별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자율적 이행 노력 전개(전 공공기관)
 - 각급 기관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금지 등 행동강령 주요 행위기준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 적극 실시
 -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자율적인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활동 적극 전개
 - ※ 필요시 점검실적 제출 요청 등을 통해 점검실적 확인 예정
- 행동강령 위반 신고 빈발분야 재발 방지 노력 강구(전 공공기관)
 - 특히, 출장여비 신청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조례·사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장여비 허위·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직자 교육 및 자체 점검 실시
 - ※ 출장여비 허위·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징계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재발 방지 및 불법적 비위 관행 원천 차단

4.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1.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는 체계적인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사전예방적 부패방지 체계 확립

- **(대상기관)** 17개 시·도(상반기) 및 61개 자치구(하반기)를 대상으로 반기별 순차 평가
 - ※ ('22년) 79개 지자체 完, ('23년) 78개 지자체 실시, ('24년) 86개 지자체 예정
 - ※ [참고] '23년도 평가 대상 자치단체 현황은 '참고자료 1(자료집 51쪽)' 확인
- **(평가방식)**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 개선권고가 많았던 지방의회, 보조금, 민간위탁('22년 하반기 79개 지자체 평가 개선사례 참고) 등 중점 점검하고 필요시 기관 방문
 - ※ 대상기관의 자체점검 실시(~2.8.) : '22년 개선사례 공유 및 해당 여부 사전 점검
 - 지역의 주요 부패·비리 사건 등을 현안과제로 발굴하여 평가하고 지자체의 유사 자치법규 일괄 개선
 - ※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위임된 내부지침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개선권고)**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별 개선안을 마련하여 개선권고
 - 각 지자체는 개선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실적을 제출

< '22년 하반기 79개 지자체 주요 개선권고 사례(의회, 보조금, 민간위탁 분야) >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17개 과제)

- (국외출장) 공무국외출장 변경 시 심사 생략요건 개선, 실효성 있는 심사기준 마련
- (국내여비) 12km 미만 출장비 지급 근거 삭제,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5배 가산징수)
- (업무추진비) 접대비 사용 제한(4만원초과→3만원이하), 업추비 사적용도 사용금지 등
- (검직신고) 검직신고 내용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 공개 의무화 등
- (징계)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 징계대상 비위행위 추가 등

□ **보조금 및 금고 협력사업비 등 재정누수 차단** (18개 과제)

- (전기차)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결정의 모호성 제거 및 편취 환수·제재와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차의 5년 의무운행기간 설정
- (금고) 금고지정 시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고 지정 결과 홈페이지 등 공개, 협력사업비 세입조치하고 총액 공개(집행내역은 재정공시)
-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과 당연직 위원 공석 시 대리출석 범위를 하위직급이 아닌 직무대리 직위자로 지정

□ **민간위탁 및 기업 투자** (20개 과제)

- (공영주차장) 경쟁계약에 의해 수탁자 선정,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위탁료 산출기준(주차면수, 공시지가, 운영일수, 실제 주차비율 등) 명시
 - 수탁자 관리감독 근거·방법 마련 및 주차요금 감면사유 명확화
-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원칙에 반하는 비공개 예외사유 삭제하고, 시설·장비·비용의 위탁목적대로 사용 의무화(변경사용 승인 등)
 - 연 1회이상 감사 실시 및 결과 위법·부당사항 시정·인사조치 병행
- (기업유치·지원) 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대상·상한금액 등의 위임근거 마련, 기업인 지원대상 및 지원중단의 단체장 재량 배제

[협조 요청 사항]

○ 평가 추진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해당 기관)

- 부패유발 개선과제 발굴 등을 위한 사례 공유 및 현장방문 등 협조
 - ※ '22년 하반기 79개 지자체 개선권고 사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례 등

○ (권고 이행) 평가 결과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등 적극 협조(해당 기관)

- 개선과제의 취지, 각 지자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그 이행계획(실적)을 제출

2.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및 사후관리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지속적인 이행관리로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효과 확산 기여

□ 잔존하는 불공정·특권 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공정사회 기반 구축)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기득권 카르텔, 특혜 제공 등 불합리한 관행과 유착을 차단
- (부조리 차단) 경제회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공재정 지원·집행의 누수 방지

□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이행점검)

- (정기 이행점검)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주기적 이행점검 대비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통보(3월 예정) 시, 각급 기관은 과제별 이행실적 확인 후 점검결과 제출
 - ※ 제출사항 : 이행완료 여부, 미이행 과제별 지연 사유 및 추진계획 등
 - 이행점검 결과는 증빙자료 등의 확인을 거쳐 이행완료 여부 검토 후 국회, 국무회의 등에 보고 및 종합청렴도 등에 반영 추진
- (맞춤형 관리) 이행 저조기관에 대한 맞춤형 이행관리(수시)
 - 미이행 과제의 조속한 이행방안 협의 및 대체방안 논의를 위해 찾아가는 기관별 컨설팅 실시('23.3월 이행현황 통보 시 신청안내)
 - 이행률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확인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현지 이행실태 점검 실시(하반기)
 - ※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감독기관과 협업점검 실시
 -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사례 등은 언론 공표

- (장기 미이행 과제)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마련
 - 권고 후 조치기한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이행률이 저조한 과제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상반기)
 - 점검결과, 권고 취지가 현재도 유효하고 국민 입장에서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재권고 검토
 - 환경 및 정책변화 등으로 시의성 떨어지는 과제는 관리종결 검토

[협조 요청 사항]

-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조회 시 기한 내 제출(전 공공기관)
- 기관별 권고 이행현황 통보 시 점검결과 필히 제출(전 공공기관)
 - ※ 기관별 점검 안내는 별도 공문 시행('23.3월 예정)
- 맞춤형 이행지원 필요기관 컨설팅 수요 제출(해당 기관)
 - ※ 컨설팅 신청관련 구체적 안내는 별도 공문 시행('23.3월 예정)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 우수 협조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추천

5.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내실화

- ◇ 각급 공공기관내의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안내 등 철저
- ◇ 비위면직자 관련 정보의 청렴포털 자료입력 등 적극적인 협조 요청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 (안내 강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2.7.5. 시행)으로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의무화 (법 제82조 제2항, 제6항)
- (취업제한대상·기관 정비) 취업제한대상자에 집행유예 받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취업제한기관 중 ‘공공기관’에 국·공립 학교까지 포함하여 규정 명확화(법 제82조 제1항, 제2항)
- (취업제한기산점 구체화) 형의 종류 등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 관련 취업제한기간 기산점을 판결 확정일로 구체적으로 명시(법 제82조 제3항)

< 참고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

- ▶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재직 당시의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공공기관 청렴포털시스템 입력 자료 관리 및 교육 강화

- (자료관리) ‘공공기관 청렴포털시스템’에 입력·제출한 각급 기관의 비위면직자등 발생현황 자료 점검·관리 강화(연 2회, 상·하반기)
 - ※ (청렴포털 미입력 사례) ○○군수가 뇌물수수로 집행유예형 확정 후 당연퇴직 되었으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권익위 실태점검에서 적발되어 고발
- (교육 강화)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교육과정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과정’ 신설
 - ※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 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과목 신설

[협조 요청 사항]

- 비위면직자등 당사자 대상 취업제한제도 안내 철저(전 공공기관)
 - (조치1)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취업제한 기한, 취업제한기관 등)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안내(운영지침,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공문을 통해 안내
 - (조치2) 대상자에 대한 안내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등)는 5년간 보관
 - ※ 취업제한제도 미안내로 인해 취업제한 위반으로 해임·고발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을 상대로 민원, 소 제기 등 문제제기 가능성 사전 예방
- 비위면직자등 명단 관리 및 자료제출 철저(전 공공기관)
 - (조치1) 상·하반기(각 1회)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를 청렴 포털에 입력 시 제출기한 엄수 및 관련 서류(징계처분사유서, 판결문) 제출 철저
 - ※ 퇴직공직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거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급여 제한자로서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명단 제출
 - (조치2) 취업제한 위반여부 검토 철저 및 취업실태 현장점검 협조
 - ※ 실태점검 관련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요청시 사실관계 철저히 검증하여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기한 내 제출
- 채용공고시 비위면직자등 채용제한사유 명시(전 공공기관)
 - 공공기관 채용공고문 채용규정 제한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 제한’ 관련규정을 명시하여 공고
- 퇴직 전 공공기관 취업제한 여부 확인 협조(전 공공기관)
 - 퇴직 전 공공기관은 취업제한대상자가 재취업을 위해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시(시행령 제89조)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 등 적극 요청 후 처리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참여 협조(전 공공기관)
 - 공직자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이 될 경우 취업제한 대상임을 수시로 교육하고, 향후 국민권익위의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6.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도 향상 촉진

1.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강화

◇ 평가모형 정교화, 결과활용 확대로 평가 완성도를 제고하고, 쌍방향 소통, 우수사례 확산 및 인센티브 강화로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 지원

□ 전략적 대상기관 선정으로 사각지대 없는 청렴수준 평가

- (대상기관) '22년 미평가 기관 신규 평가, 부패취약 분야 추가 기관 중점 평가 등 대상기관 확대

※ ('22년) 573개 → ('23년) 약 670개 기관(잠정)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

- (신규) '22년 지방선거 실시로 미측정된 지방의회(92개), 격년 평가 원칙에 따라 제외된 연구원 유형(약 20개) 신규평가 실시
- (중점·취약분야) 대형 부패이슈가 발생한 기관, 고질적인 부패 취약 분야* 기관들을 추가 선정해 중점 평가 실시

* '22년 종합청렴도 미흡기관, 부패사건 모니터링 결과, 대국민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부패수준 취약분야(예시: 건축·건설·주택·토지, 식품·위생 분야 등)를 활용

□ 평가모형의 지속적 개선·보완으로 평가 타당성 제고

- (평가체계) 개편 이후 첫 시행된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평가모형을 보완·정교화

※ (예시) 각 영역별 반영(감점) 비율, 영역내 평가 항목·지표 및 점수 체계 등

- (청렴체감도) 연도별 시계열 분석을 위해 설문지 큰 틀과 방향은 유지하되, 문항은 개선·간소화하여 응답자 부담 경감

※ 핵심설문 중심 구성, 활용성이 낮은 부가설문은 제외

- (청렴노력도) 실질적 청렴수준 개선효과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위주 평가로 평가 대상기관의 부담 완화

※ 핵심지표 중심의 '23년 적용지표(안)을 '23년 평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공개하여 각급 기관의 의견수렴(3월~) 후 실시계획에 최종 확정·반영(5월)

※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업무성격이 다른 기관유형(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시도경찰청)은 별도지표로 구성된 노력도 특화모형 적용 검토

□ **평가의 수용성 향상을 위한 소통과 환류**

○ **(소통 강화)** 평가체계에 대한 전방위적 개선방안·아이디어 의견수렴* 및 기관 유형별 맞춤형 워크숍** 등 소통 방식·기회 확대

*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공문 등 의견수렴(3~4월) 예정

** 적용모형·지표에 따라 3개 내외 유형으로 구분하여 교육 및 의견수렴

○ **(활용 확대)** '22년 우수시책 사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굴·전파, 반부패 정책 국외연수 등 유인 제공

※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연수 재개

[협조 요청 사항]

- '23년도 평가 기본계획(2~3월) 관련 의견 제출(3월, 평가 대상기관)
 - 기관유형별 워크숍(3~4월 예정)도 적극적 참여
- '23년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 등 협조(평가 대상기관)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자료 및 부패실태 자료 제출, 청렴노력도 실적 자료 등 평가자료 제출
 - ※ 자료제출 내용 및 시기는 제출시기별로 별도 안내(공문 등) 실시 예정
 - ※ 신뢰도 저해행위 등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기준 확인 및 철저한 검수·확인 요청
 -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 충실성, 신뢰도 저해행위 여부 등에 대한 현지점검 대상기관 선정 통보에 따른 점검 사항 협조(하반기)
 - ※ 점검 대상, 추진 일정 및 방식 등 추후 확정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후속조치 실시(평가 대상기관)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평가결과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3.31.)

2. 청렴도 저조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 ◇ 심화된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통해 종합청렴도 저조기관의 자율적 청렴역량 강화와 청렴도 향상 지원

□ 청렴컨설팅 지원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반부패 역량 강화가 요구되거나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 제시

- 청렴도 저조기관을 대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각급 기관으로 확산함으로써 공공기관 전반의 청렴수준 향상 도모

※ ('06년) 제도 도입, ('16년) 법적 근거 마련, ('18년) 멘토-멘티 그룹제 도입

- (주요 성과) '06년부터 '22년까지 총 216회 청렴컨설팅 지원

중앙행정 기관	광역자치 단체	기초자치 단체	시·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공직유관 단체	국공립대 · 병원
24회	21회	73회	13회	5회	74회	6회

- 기관별 맞춤형 대안 제시로 '22년도 청렴컨설팅 멘티기관의 종합 청렴도 상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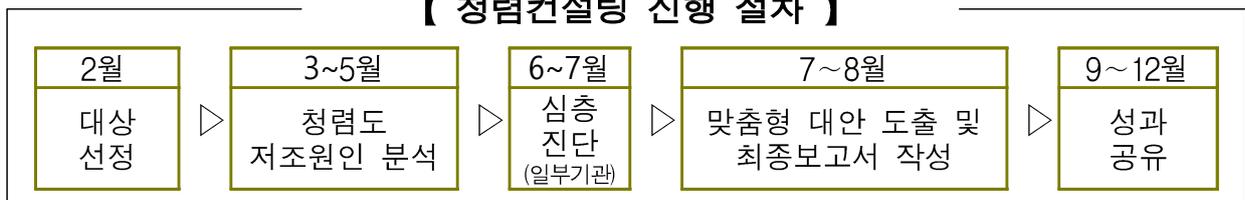
※ '21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대비 '22년도 종합청렴도가 향상된 기관은 총 17개(73.9%)이며, 그 중 4개 기관은 우수기관(종합청렴도 1~2등급) 달성

- (진행 방식)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에는 청렴컨설팅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수기관은 미흡기관의 멘토링을 전담할 수 있도록 컨설팅 그룹 지원
- (지원 내용) 종합청렴도 결과, 부패사건 현황 등을 분석해 멘티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 그룹이 함께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

□ '23년 추진 방향

- **(중점 추진사항)**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그룹 컨설팅을 실시하고, 일부 기관에 대한 심층 진단을 도입하여 컨설팅 효과성 제고
 - **(그룹 컨설팅)** 지역·규모·유형·업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그룹 구성, 멘토·멘티기관 간 자유회의 및 우수시책 공유 등 추진
 - **(심층 진단)** 기관 내부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청렴도 저조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안에 반영(약 6개 기관)
 - ※ 심층진단 대상은 멘티기관의 컨설팅 추진의지, 시책 추진 여건, 내부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선정할 예정
- **(추진 일정)** 컨설팅 그룹 선정 및 착수회의, 설문조사 및 자료분석, 자문회의 및 자유회의, 컨설팅 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
 - 기관 유형·규모, 권역, 분야 등을 종합 고려해 1개 멘토기관(1~2등급)과 2~3개 멘티기관(4~5등급)이 컨설팅 그룹을 자율 구성하여 신청(2.9.~16.)
 - 신청 그룹에 대한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10~11개 그룹 선정(2월 4째주) 및 착수회의(2월 말) 진행 예정
 - ※ 멘토기관 신청기관 중 최근 5년('18~'22년) 내에 청렴컨설팅 멘티기관으로 참여해 종합청렴도 우수기관(1~2등급)으로 개선된 기관을 우선 선정할 예정

【 청렴컨설팅 진행 절차 】



[협조 요청 사항]

- '23년도 청렴컨설팅 멘토-멘티기관(컨설팅 그룹) 참여(수요 기관, 2.9.~16.)
 - '23년도 컨설팅 참여 희망기관인 경우, 멘토기관이 그룹을 구성하여 국민권익위에 대표로 신청(개별 신청 불가, 기한 준수 필수)
 - ※ (공문) '23년도 청렴컨설팅 신청 안내('23.2.6.) 참고

7.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공직사회 청렴역량 강화

1. 공직자 부패방지 의무교육 내실화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등 효과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청렴교육의 효과성 및 청렴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강화

□ 기준 구체화, 교육 활성화 유도 등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 개정

- (교육방법) 교육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사이버 교육, 마이크로러닝 등 다양한 방식 활용 가능
 - 마이크로러닝 등 새로운 방식의 청렴교육도 활용 가능하도록 인정하여 기관 자체 청렴교육 촉진 유도
 - * 마이크로러닝 방식이란 기존의 사이버 코스웨어 형태가 아닌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한 길이로 핵심 내용 위주로 전달하는 학습 콘텐츠를 의미
- (기준정비) 청렴교육 대상 범위, 고위공직자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교육 결과보고 및 증빙 서식을 제공하여 애매모호한 기준 정비
- (실적점검) 교육실적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 안내 및 지원, 현장점검 등 실적관리 강화

<실적점검 추진일정>

실적제출	⇒	서면점검	⇒	후속조치*	⇒	결과 보고 및 공개
공공기관		권익위		(권익위, 공공기관)		(권익위, 공공기관)
1~2월		3~5월		6~8월		9월

* 특별관리자 교육 및 부패방지 교육 이행 계획서 제출, 현장점검 등

※ 현장점검(4~8월) : 교육실적 부진, 증빙자료 미제출 등 교육안내 및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

□ 교육여건 취약기관 대상 청렴교육 지원 확대

-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기관, 교육실적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 지원
 - (소규모기관) 청렴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안내,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이러닝 운영 안내 등을 통해 청렴교육 참여 유도
 -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일반) 및 공식 유튜브 채널,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청렴교육 자료) 등에 게시
 - (부진기관) 청렴교육 실적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관리자급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연수원내 특별교육과정* 운영(청렴연수원 협업)
 - * 주요 반부패 정책 소개,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안내, 청렴교육 특강 등으로 구성

[협조 요청 사항]

- '22년 청렴교육 실적 제출(전 공공기관)
 - '22년에 각급기관에서 실시한 청렴교육 실적을 '23년 2월 말까지 청렴포털(<http://ep.clean.go.kr>) 시스템에 교육실적 입력 및 제출(~2.28)
-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실시 및 참여 협조(전 공공기관)
 - ※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은 별도 공문 송부 예정('23.2월 중)
 - ※ 참고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각각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22년 청렴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4월~8월) 시 협조(해당 기관)
 - 교육실적 부진,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 교육안내 및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2. 청렴교육 운영 지원 강화

- ◇ 기관유형별·공직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청렴교육 내실화
- ◇ 청렴교육강사 양성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한 **자체 청렴교육 실시 지원**

□ 교육운영 방향

- **대면·참여형 등 교육 방식의 변화로 교육 효과성 제고**
 - **(대면교육 전환)** 온라인 교육 위주로 운영했던 청렴교육 과정을 교육 효과성 및 만족도가 높은 **대면교육 방식**으로 전환
 - ※ 일부 대규모 교육과정은 대면/비대면 방식 병행 운영
 - **(교육일정 확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일 위주로 운영되었던 교육과정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2~4일 과정**으로 운영
 - * 토론형 학습, 분임토의 등 체험·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 콘텐츠 강화**
 - **(원내교육)** MZ세대 과정, 공정채용 전문 과정 등 신규 개설로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 ※ 청렴연수원은 청렴교육 과정 외에도,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업무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음(고충처리, 권익개선, 행정심판 등)
 - **(이러닝)**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생의 이러닝 학습 선택권 확대
 - * 공정채용 제도(가칭) / 청렴, 다른 나라는 어떨까?(가칭) 등

□ 주요 교육과정 안내

- **(고위직)** 반부패 법령의 이해 및 실천, 명사 초청 특강 등 **고위직 맞춤형**으로 설계된 '청렴리더십' 과정 운영(16회, 1,280명)
 - ※ 교육 시간을 작년 대비 확대(3시간 → 5시간)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
- **(지방의회)** '반부패 법령 특강', '청렴리더십 특강', '청렴 서약식' 등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맞춤형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운영(40회)

- **(청렴Live)** 교육 수요기관 대상 판소리, 샌드아트, 뮤지컬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형 교육 ‘청렴Live’ 운영(60회)
 - ※ 대상기관 선정 시, 기관장·고위공직자 참석률이 높은 경우 및 소속기관·유관기관 합동교육 추진 시 우선순위 부여
- **(강사양성)** 기관 청렴업무 담당자 대상 **내부강사 양성과정**(6회, 1,500명) 및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3회, 150명) 운영
 - ‘내부강사 양성과정’은 기관 청렴업무 담당자의 신청을 받아 선발 후 필기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1년간 내부강사 자격 부여
 -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과정 이수 후 필기시험 및 강의 시연평가를 통과한 자에게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
- **(이러닝)**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를 운영하여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법’ 등 25개 이러닝 과정 운영(2~12월, 과정당 월 2,000명)

□ 청렴교육 콘텐츠 보급

- 기관 자체 청렴교육 실시 지원을 위해 청렴연수원 개발 이러닝 과정, 영상콘텐츠 등 적극 배포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게시물을 활용하거나,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 청렴연수원에 공문을 통해 공유 신청할 경우 내려받기 가능

[협조 요청 사항]

- 고위직, 승진자, 신규자 등 대면교육 참여 협조(전 공공기관)
-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적극 참여 요청(지방의회)
- 기관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연수원 개발 콘텐츠 적극 활용 요청(전 공공기관)
- 기관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교육강사 적극 활용(전 공공기관)
 - 청렴교육 전문·소양강사(청렴연수원 홈페이지 검색) 또는 ‘내부강사 양성과정’ 평가에 합격한 소속 직원 활용

8.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등 자율적 청렴활동 지원

- ◇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내실화를 지원해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율적 청렴활동 강화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내실화

- 청렴시민감사관 및 실무자 대상 온·오프라인 워크숍 개최로 제도 운영방식 안내 및 우수사례 공유(중앙·지자체·공직유관 각 1회)
- 제도 운영 활성화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도입 희망 기관, 운영 미흡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실시(수시)

* (대상) '22년 청렴노력도 평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지표 미흡기관

[협조 요청 사항]

-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적극 참여 및 우수사례 발굴 협조(전 공공기관)
※ 구체적인 일정 등은 추후 확정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맞춤형 컨설팅 수요 제출(희망 기관)

9. 촘촘하고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 ◇ 국민 관점에서 신고자 보호 제도를 정비하여 신고자 보호 체감도를 제고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신고자 보호·보상 법령 정비

- (보호·지원 법 일원화) 반부패 5개 법률*의 보호·지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호·지원 제도 일원화 입법 추진

- 신고자 보호제도 및 위반자 제재수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 (보상기준 개선) ①보상금 지급비율 30%로 정률화, ②보상금 지급 상한 폐지 또는 조정, ③포상금 지급 상한 5억 통일 등 신고자 보상기준 개정

※ 입법예고('22.10.13.~11.22.) 후 법제심사 및 기관추가 협의 진행 중

구 분	現 부패신고	現 공익신고	現 환수법 신고	개정
보상금 지급률	4~30%	4~20%	30%	30%
보상금 상한	30억	30억	30억	폐지 또는 조정
포상금 상한	5억	2억	2억	5억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포상은 부패신고를 준용)

- (신고 사각지대 해소) 대국민 안전 등 공익과 관련이 높은 신규 제·개정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공익신고 대상 확대

* 「마약거래방지법」, 「화재예방법」, 「교육시설법」 등을 추가하는 취지의 정부입법 예정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기반 강화

- (보호규정 위반 방지) 신고 접수·처리 시 보호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 교육, 신고성 민원 처리 개선* 등 추진 예정

* (예시) 국민신문고가 아닌 청렴포털로 신고 접수하도록 안내

- **(협업체계 제고)** 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협의회*를 통해 신고자 보호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미설치 지자체도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회 확대 예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질의회신, 판례등을 통합적으로 반영한 법 해설서를 제작하여 신고접수기관에 제공(6월 예정)
 - 또한 공익신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신고 빈발분야를 선정하고, 신고처리·보호 등 프로세스별 현장 맞춤형 자료 배포(9월 예정)

[협조 요청 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해설서’ 수요조사 응답 협조(해당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 중 해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조사(3월 예정)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참여 협조
- 신고자 보호 교육 수요조사 응답(일정 미정) 및 신청(수시)(해당기관)
 - 국민신문고 민원 및 감사업무 담당자 대상 신고자 보호 교육 수요조사 시 교육 신청
 - ※ 민원 및 감사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신규 공무원 등 신고자 보호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신청 가능
- 보상금 지급기준 등 개정 시 홍보 협조(3월 예정, 수시)(해당기관)
 - 보상금 지급기준 등 개정 시 신고자들에게 보상금 제도가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현재 법제처 심사 단계)
- 신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금의 적기 납부(해당기관)
 - ※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 등에 따라 징수 예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3항)

10. 부패행위 등 적발·처리의 실효성 강화

- ◇ 신고창구 접근성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 ◇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부패·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 온라인 부패·공익 신고 창구 관리 강화

- 각급 기관이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부패·공익 신고 창구를 권익위가 관리·운영하는 청렴포털로 일원화하여 신고창구의 접근성 강화
 - 신고자가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공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개설
 - ※ 청렴포털을 통해 912개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 접수 가능('22년)
- 청렴포털을 통해 각급기관의 부패공직자 현황, 신고사례, 관련지침, 청렴활동 등 반부패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의 편리성 제고

□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홍보 강화

- 시기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고질적인 부패·공익 침해행위 단속

분야(예시)	신고대상	시기
불공정 거래	입찰담합, 불법하도급 등 국가 및 지방계약법 위반	3월~5월
공공재정 부정수급	요양급여, 연구개발, 실업급여 등	6월~8월
안전, 환경	건설 자격증 불법대여, 허위·부실 시험 인증 등	9월~11월

* 현안이나 이슈가 되는 사안 발생시 집중 신고기간을 추가하는 등 탄력적 운영

- 부패·공익신고 빈발 분야에 대한 신고사건 사례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고 활성화 유도
 - ※ TV자막·라디오 등 언론홍보, 공공기관 홈페이지, 온라인(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광고 등을 활용

□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 효율적인 신고사무 처리를 위해 권익위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서류 제출 요구 등에 대한 거부 및 지연 사례 예방
- 청렴포털로 접수된 신고 사건 및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으로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 ※ 신고자는 신고사건 처리 단계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신고사건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 등을 준수
- 이첩·송부 사건 조사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 파악을 위해 관계 기관 협력 강화
 - 신속한 부패수익 환수,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해 이첩·송부사건의 수(조)사·재판 결과의 파악·공유 기반 강화

[협조 요청 사항]

- 부패·공익신고 창구 개설 등 운영 개선 : '참고자료(자료집 67쪽)' 참조(해당기관)
- 각급기관 고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 홍보(전 공공기관)
- 부패·공익 등 신고사건 조사처리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해당기관)
- 청렴포털 온라인 신고사건 관리 강화(해당기관)
 - ※ 청렴포털 신고 처리방법: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 공지사항 참조
- 조사기관에 신고사건 이첩·송부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이첩사건에 대한 소청·소송 등에 따른 최종적인 조사결과 제출 협조(해당기관)
 - 장기 미통보된 이첩·송부 사건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협조
- 이첩·송부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시 협조(해당기관)
 - ※ 반기별 이첩사건 점검 공문시행 시 자료 협조



협 조 사 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1. 기본 방향

- 지역주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설치·운영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구

2. 주요 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수용성 증대
 - 원처분 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원처분 부서가 재차 당해 민원을 처리하는 불합리 해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행위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가능
 - 행정소송 등 사법구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체 시정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노력 절감

※ 민원처리의 기본법령인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고충민원 처리기관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이 포함(시행 '19.6.4.)

[협조 요청 사항]

- 각 지자체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적극 설치·운영

※ 미설치 또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기관의 경우 컨설팅 요구시 적극 지원
(연락처 : 국민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 ☎ 044-200-7315, 044-200-7318)

참 고 자 료

연번	시도	시군구	자치법규 현황					비고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계		78개	48,341	33,485	8,467	4,723	1,666	
소계 <시도>		17개	17,701	12,881	2,656	1,667	497	
1	강원도	본청	973	667	160	111	35	광역
2	경기도	본청	1431	1,112	212	83	24	광역
3	경상남도	본청	1019	738	142	92	47	광역
4	경상북도	본청	1017	722	137	122	36	광역
5	광주광역시	본청	1108	789	155	118	46	광역
6	대구광역시	본청	915	611	159	104	41	광역
7	대전광역시	본청	955	677	133	131	14	광역
8	부산광역시	본청	1073	838	116	90	29	광역
9	서울특별시	본청	1099	805	252	30	12	광역
10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834	632	115	71	16	광역
11	울산광역시	본청	873	644	124	87	18	광역
12	인천광역시	본청	1038	752	176	77	33	광역
13	전라남도	본청	1120	814	154	126	26	광역
14	전라북도	본청	1012	732	149	100	31	광역
15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1284	962	196	83	43	광역
16	충청남도	본청	1152	832	161	135	24	광역
17	충청북도	본청	798	554	115	107	22	광역
소계 <자치구>		61개	30,640	20,604	5,811	3,056	1,169	
1	광주광역시	광산구	648	429	104	81	34	기초
2	광주광역시	남구	663	445	101	80	37	기초
3	광주광역시	동구	600	400	103	69	28	기초
4	광주광역시	북구	642	424	110	70	38	기초
5	광주광역시	서구	646	404	104	88	50	기초
6	대구광역시	남구	475	290	80	63	42	기초
7	대구광역시	동구	467	312	87	39	29	기초
8	대구광역시	북구	496	322	87	53	34	기초
9	대구광역시	서구	464	280	83	54	47	기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572	382	94	54	42	기초
11	대구광역시	중구	470	275	85	69	41	기초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527	369	86	61	11	기초
13	대전광역시	동구	536	368	100	57	11	기초
14	대전광역시	서구	553	391	87	70	5	기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529	378	80	63	8	기초
16	대전광역시	중구	434	284	83	60	7	기초
17	부산광역시	강서구	451	280	84	64	23	기초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413	262	78	55	18	기초
19	부산광역시	남구	542	346	92	82	22	기초

연번	시도	시군구	자치법규 현황					비고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20	부산광역시	동구	468	292	83	58	35	기초
21	부산광역시	동래구	463	304	83	55	21	기초
22	부산광역시	북구	487	325	83	57	22	기초
23	부산광역시	사상구	426	269	81	50	26	기초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490	322	88	62	18	기초
25	부산광역시	서구	456	311	73	49	23	기초
26	부산광역시	수영구	443	280	82	55	26	기초
27	부산광역시	연제구	470	305	80	59	26	기초
28	부산광역시	영도구	477	326	82	47	22	기초
29	부산광역시	중구	469	322	74	54	19	기초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39	350	90	72	27	기초
31	서울특별시	강북구	507	351	110	30	16	기초
32	서울특별시	강서구	502	351	110	38	3	기초
33	서울특별시	관악구	464	317	103	41	3	기초
34	서울특별시	광진구	472	323	96	45	8	기초
35	서울특별시	구로구	522	371	107	40	4	기초
36	서울특별시	금천구	497	357	94	32	14	기초
37	서울특별시	노원구	602	434	124	40	4	기초
3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29	367	104	42	16	기초
39	서울특별시	동작구	529	373	119	27	10	기초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523	365	108	30	20	기초
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11	344	119	42	6	기초
42	서울특별시	서초구	464	332	105	20	7	기초
43	서울특별시	성동구	500	354	99	39	8	기초
44	서울특별시	성북구	502	350	101	44	7	기초
45	서울특별시	송파구	453	296	113	31	13	기초
46	서울특별시	양천구	544	403	95	42	4	기초
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27	371	113	23	20	기초
48	서울특별시	용산구	465	307	109	43	6	기초
49	서울특별시	은평구	491	327	97	38	29	기초
50	서울특별시	종로구	443	294	113	22	14	기초
51	서울특별시	중구	497	343	104	35	15	기초
52	서울특별시	중랑구	460	305	104	44	7	기초
53	울산광역시	남구	480	318	89	60	13	기초
54	울산광역시	중구	490	343	87	50	10	기초
55	인천광역시	계양구	496	334	102	42	18	기초
56	인천광역시	남동구	535	369	89	57	20	기초
57	인천광역시	동구	451	300	93	46	12	기초
5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518	345	105	43	25	기초
59	인천광역시	부평구	451	299	95	45	12	기초
60	인천광역시	연수구	464	311	88	41	24	기초
61	인천광역시	중구	435	303	89	34	9	기초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유의사항

1. 제도 개요

- (목적) 민간전문가가 고위공직자로 임용된 이후 공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필요
 - 고위공직자의 경우 중·하위공직자들에 비해 권한이 광범위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됨
 - ※ 특히, 민간에서 공직으로 진입하는 경우, 그간 민간영역에서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업무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고위공직자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토록 하여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사항을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자기 검열기제로서 작용
 - 또한, 기관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아 관리함으로써 이해충돌로 인한 부패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
 - 더불어 민간 업무활동 내역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 감시기구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다각적 통제 가능
- (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제출 의무

- (제출 의무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위공직자

※ 「공직자윤리법」 상의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와 그 범위가 일치

- (제출 사항)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의 업무 활동 내역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 제출 사항
① 법인·단체에 재직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②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③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운법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에서의 활동은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제출 기한) 임용일,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기한

- (제출 대상) 소속기관장

※ 기관장이 제출 의무자인 경우 소속기관(또는 보좌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

- (제출 방법)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며, 필요시 별지 작성 및 첨부자료 제출 가능

3. 제출 항목별 세부 내용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 (명칭 및 소재지) 법인·단체의 정식 명칭과 소재지를 작성
- (근무기간) 법인·단체에 재직하면서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을 작성
- (직위·직급) 재직 당시의 직위 및 직급을 작성
- (담당 업무) 해당 법인·단체의 업무내용과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예시) OO전자는 반도체 개발 및 통신장비·휴대폰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본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예산편성, 결산서 작성, 감사보고서 작성,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Q & A >

Q1.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범위는?

- A. 「상법」, 「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등이 해당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단체도 포함됨
 - * 정부기관 등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록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않은 단체로서 사고·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은 제외됨
 - * 정당은 「정당법」에 근거한 비법인 사단(단체)으로 정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우, 재직했던 법인·단체로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할 필요(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가능)
 - * 정당의 당직이 없는 당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학회의 회원 등으로 활동한 것은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음(재직 여부는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공공 부문의 법인·단체는 제외됨

Q2. 직위 또는 직급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하는지?

- A. 임용 전 3년 이내에 재직했다면 직위·직급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함

2 대리, 고문·자문 활동

- (기관명) 임용 전 3년 이내에 대리했거나 고문·자문을 제공받은 기관의 정식 명칭(대리·고문·자문한 대상이 개인인 경우 성명)을 작성
 - ※ 대리·고문·자문을 제공받은 법인·단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인 경우는 작성 제외
- 개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서 또는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 소속하여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명 작성
 - ※ 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서 소속 법인의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는 고문·자문을 제공받은 제3자가 없으므로 소속 법인·단체명을 기재
- (활동기간) 기관 등을 대리하거나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기간을 작성
- (담당 업무) 해당 대리, 고문·자문 제공 관련 담당했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위임장, 자문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Q & A >

Q1. 대리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 A. · “대리”란 타인(본인)을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민법」상 “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는 대리행위는 직업이나 그 밖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환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행한 행위임
 - 변호사의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세무대리, 행정사의 신청·청구 등의 대리, 개업공인중개사의 경매에서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변리사의 특허 등에 관한 대리, 관세사의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 공인노무사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 대리 등이 전형적인 대리에 해당함

Q2. 고문·자문이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 A. · “고문”은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자문”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는 고문·자문 행위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환으로 타인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하는 행위임
 - 고문계약, 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고문, 자문위원,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의견 제시·조언하는 지위에 위촉·선정·채용되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문·자문에 해당함

Q3. 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인 계약 행위가 없었음에도 대리, 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 A. 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인 계약행위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리, 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형태 등에 비추어 구두계약 또는 묵시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리, 고문·자문 등을 수행했던 경우로 볼 수 있음

Q4. 개인변호사이거나 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로서 임용 전 3년 간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사안이 300건이 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명을 모두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 A. 임용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민간 법인·단체의 기관명(개인인 경우 성명)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Q5. 법인·단체에 속하여 소속 법인·단체의 건축사, 회계사 등 임원 및 직원에게 일반적 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 A. 소속된 법인·단체명을 작성하여 제출함. 지정변호사 등으로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을 담당한 사안이 아니라면 소속된 법인·단체가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까지 개인·법인·단체명을 작성·제출할 필요 없음

Q6. 법인에 재직하면서 그 법인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 어떤 항목에 작성해야 하는지?

- A. 법인에 고문, 자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법인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다면 해당 법인을 “재직정보(재직했던 법인·단체 등)” 항목과 “고문 및 자문활동(대리, 고문·자문 등)” 항목에 모두 작성해야 함

3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 (업체명 및 소재지) 관리·운영했던 업체의 정식 명칭과 소재지를 작성
- (근무기간) 사업 등을 관리·운영했던 기간을 작성
- (직위·직급) 사업 등을 관리·운영했던 당시의 직위 및 직급을 작성
- (담당 업무) 해당 업체의 업무 내용과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예시) 본인이 관리·운영했던 000은 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허가를 받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음료를 판매·제공했던 업체임. 본인은 해당 업체의 사장으로서 음료 발주, 재고 관리, 업소 관리 등 카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음
-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Q & A >

Q1. 관리·운영의 의미는 무엇인지?

A. "관리·운영"이란 해당 사업 또는 영리행위에 관해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나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영리행위 전반에 대한 지배권 및 의사결정권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Q2. 대표자가 아닌 부회장·부사장 등 고위직이었던 경우가 관리·운영에 해당하는지?

A. 해당 사업체의 관리·처분 전반에 걸쳐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는 정도가 아닌 한 부회장·부사장 등 고위직에서 사업체의 일부 업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Q3. 단순히 자금 등을 관리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해당하는지?

A. 해당 사업 또는 영리행위에 관해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아니며 실질적인 지배권 및 의사결정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자금 관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는 사업을 관리·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Q4.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제출대상인지?

A. 등록대상자가 비영리법인에서 지배권 및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관리·운영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Q5. 사업 또는 영리행위 등록대상 업체 등의 범위는?

A. · 「상법」, 「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등이 해당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단체도 포함됨
 ·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영업허가·영업신고 등을 한 경우 제출 대상에 해당함

5. 제출 내역의 공개

- (공개 주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은 소속기관장
 - ※ 기관장의 제출 내역은 소속기관(보좌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공개 결정 가능
- (공개 범위)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하였던 사업·영리행위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리·고문·자문했던 내역은 법령, 업무편람, 본 유의사항을 참조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하되, 다만 공개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공개

※ 정보 공개 관련 다른 법령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비밀유지 등) 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참고**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서식(별지 제7호 수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및 자료 협조 동의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관장 귀중

제출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해충돌방지법 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이행 관련 안내 (2022.6.27, 행동강령과-6507)

- **(수의계약 체결시 확인 의무)** 각급 공공기관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상대방이 수의계약 제한 대상인지 여부 확인 의무
 - ※ 법 제12조제1항(수의계약 제한 대상) :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등
- **(확인 의무 대체)** 수의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 제출받는 방식의 확인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식 배포('22.2.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 **(확인서 제출 대상 제한 등)** 확인서 제출에 대한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기관 계약부서의 계약담당자'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으로 한정하여 확인서 제출 한정('22.3.3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
 - 동일한 업체와 반복 수의계약 체결시, 업체 대표 또는 기관의 제한 대상자 동일시 최초 제출 확인서로 같음
 - 온라인 쇼핑물을 통한 물품 등 구입의 경우 확인서 제출 면제
- **(확인서 제출 생략)**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각급 국립·공립학교의 경우 계약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1인이 해당 기관의 모든 계약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부담 정도가 경감되지 아니함(시·도 교육청의 의견)
 - 소액 구매 지출, 출장 중 일회성 지출 등 확인서 징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견적서 제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확인서 제출도 생략 가능

연번	주요 내용	
1		<p>【고위공직자를 위한 상황별 청렴수칙 안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직자가 유념해야 하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규범의 내용을 상황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서 * '23년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과정에 활용, 연수원 홈페이지 게시
2		<p>【고위공직자의 반부패 법령 주요 위반사례 강의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법령 위반 사례 중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주요 사례를 정리한 강의안 * 원내 교육과정 활용 및 연수원 홈페이지 탑재('22.7월)
3		<p>【'이해충돌방지법 탐구생활' 단막 영상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충돌방지법」상 10개 행위기준을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의 2개 에피소드로 구성한 짧은 드라마 형식의 영상물 * YouTube 및 연수원 홈페이지 탑재('22.9월), 교육과정에 활용
4		<p>【현장 공직자 맞춤형 사이버 코스웨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소방·교정공무원, 군인 등 현장공직자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러닝 코스웨어 * '23년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 이러닝과정 운영
5		<p>【지방의회 맞춤형 영상 콘텐츠 '지방의원 청렴을 부탁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청렴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여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청렴도 향상 노력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영상 *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활용('22.7월~)
6		<p>【공직자·직장인을 위한 청렴 자가진단 테스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자·하급자별 부패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처 수준을 알아보고 올바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청렴 자가진단 테스트 프로그램 * '23년 청렴연수원 원내 교육과정에 활용
7		<p>【시청각 장애인 대상 청렴교육 사이버 코스웨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폐쇄자막, 수어 등 시청각 장애 관련 편의기능을 추가한 사이버 청렴교육 코스웨어 * 이러닝과정 운영('22.12월~)

월	과정명	기수	교육인원	교육일자
2월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온라인)	1기	500명	2.15.(수)
	청렴교육강사 보수교육(온라인)	1기	200명	2.23.(목)
3월	신규자 과정(공직유관단체)	1기	40명	3.2.(목)~3.3.(금)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1기	50명	3.6.(월)~3.9.(목)
	승진자 과정(공무원)	1기	70명	3.7.(화)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온라인)	2기	500명	3.10.(금)
	2030세대 과정	1기	40명	3.17.(금)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1기	250명	3.21.(화)~3.23.(목)
	고위직 과정	1기	40명	3.22.(수)
	신규자 과정(공무원)	2기	40명	3.29.(수)~3.30.(목)
4월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온라인)	3기	500명	4. 5.(수)
	승진자 과정(공직유관단체)	2기	70명	4. 6.(목)
	청렴교육강사 보수교육	2기	70명	4. 7.(금)
	고위직 과정(온라인)	2기	150명	4.12.(수)
	신규자 과정(공직유관단체)	3기	40명	4.17.(월)~4.18.(화)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2기	250명	4.18.(화)~4.20.(목)
	부패대응능력 향상 과정(인사)	1기	40명	4.19.(수)
	청렴감성지수 향상 과정	1기	40명	4.24.(월)~4.26.(수)
	고위직 과정	3기	40명	4.26.(수)
5월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온라인)	4기	500명	5.10.(수)
	승진자 과정(공무원)	3기	70명	5.11.(목)
	전문과정 합격자 강의역량 향상과정	1기	30명	5.15.(월)~5.16.(화)
	고위직 과정(온라인)	4기	40명	5.17.(수)
	2030세대 과정	2기	40명	5.18.(목)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3기	250명	5.23.(화)~5.25.(목)
	전문과정 합격자 강의시연평가	1차	30명	5.29.(월)~5.30.(화)
	신규자 과정(공무원)	4기	40명	5.30.(화)~5.31.(수)

월	과정명	기수	교육인원	교육일자(안)
6월	고위직 과정	5기	40명	6. 1.(목)
	청렴교육강사 보수교육	3기	70명	6. 2.(금)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온라인)	5기	500명	6. 8.(목)
	승진자 과정(공직유관단체)	4기	70명	6. 9.(금)
	고위직 과정(온라인)	6기	150명	6.14.(수)
	부패대응능력 향상 과정(인사)	2기	40명	6.14.(수)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2기	50명	6.19.(월)~6.22.(목)
	신규자 과정(공직유관단체)	5기	40명	6.26.(월)~6.27.(화)
	청렴감성지수 향상 과정	2기	40명	6.28.(수)~6.30.(금)
7월	고위직 과정	7기	40명	7. 3.(월)
	승진자 과정(공무원)	5기	70명	7.11.(화)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온라인)	6기	500명	7.12.(수)
	2030세대 과정	3기	40명	7.14.(금)
	신규자 과정(공무원)	6기	40명	7.24.(월)~7.25.(화)
	고위직 과정(온라인)	8기	150명	7.26.(수)
	청렴교육강사 보수교육	4기	70명	7.28.(금)
8월	전문과정 합격자 강의역량 향상과정	2기	30명	8.1.(화)~8.2.(수)
	부패대응능력 향상 과정(계약)	3기	40명	8. 8.(화)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온라인)	7기	500명	8. 9.(수)
	고위직 과정	9기	40명	8.10.(목)
	승진자 과정(공직유관단체)	6기	70명	8.11.(금)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4기	250명	8.16.(수)~8.18.(금)
	전문과정 합격자 강의시연평가	2차	30명	8.16.(수)~8.17.(목)
	신규자 과정(공직유관단체)	7기	40명	8.28.(월)~8.29.(화)
	청렴감성지수 향상 과정	3기	40명	8.30.(수)~9.1.(금)
	고위직 과정(온라인)	10기	150명	8.30.(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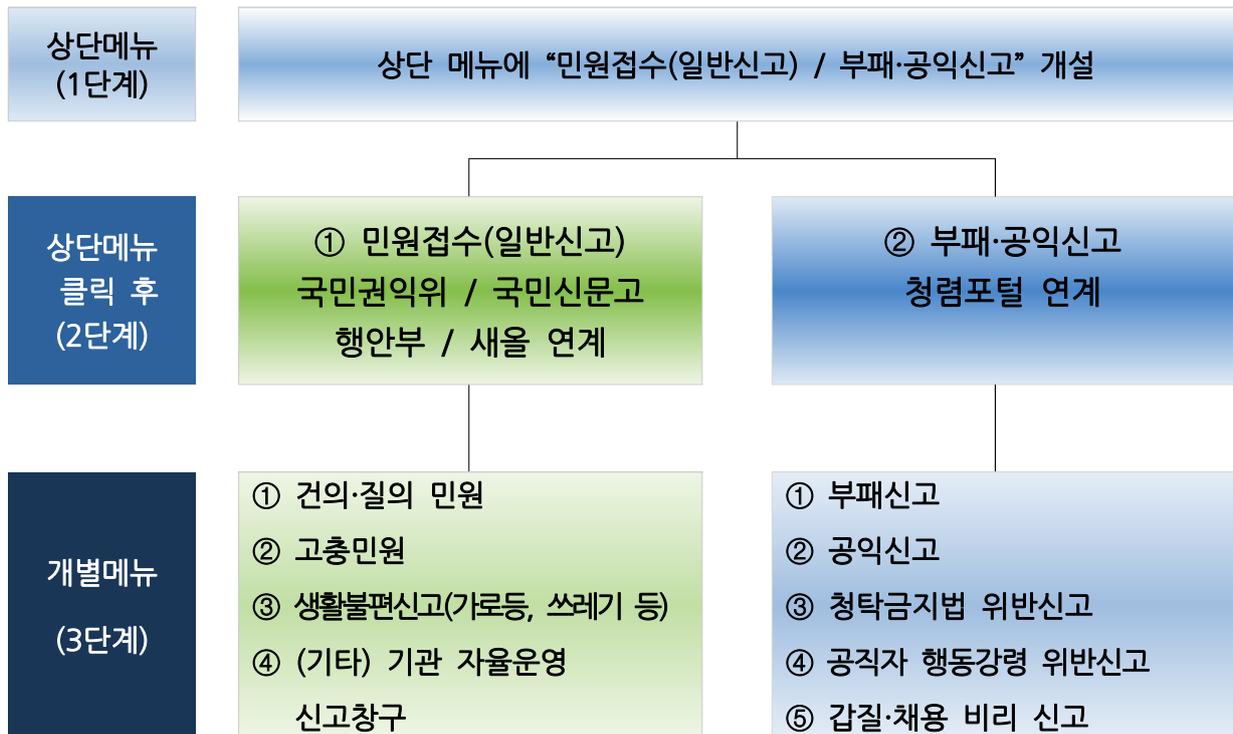
월	과정명	기수	교육인원	교육일자(안)
9월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온라인)	8기	500명	9. 6.(수)
	승진자 과정(공무원)	7기	70명	9. 8.(금)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3기	50명	9.11.(월)~9.14.(목)
	고위직 과정	11기	40명	9.15.(금)
	신규자 과정(공무원)	8기	40명	9.18.(월)~9.19.(화)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5기	250명	9.19.(화)~9.21.(목)
	2030세대 과정	4기	40명	9.26.(화)
10월	고위직 과정(온라인)	12기	150명	10. 4.(수)
	승진자 과정(공직유관단체)	8기	70명	10. 5.(목)
	청렴감성지수 향상 과정	4기	40명	10.11.(수)~10.13.(금)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온라인)	9기	500명	10.11.(수)
	부패대응능력 향상 과정(계약)	4기	40명	10.12.(목)
	고위직 과정	13기	40명	10.17.(화)
	신규자 과정(공직유관단체)	9기	40명	10.18.(수)~10.19.(목)
	청렴교육강사 보수교육	5기	70명	10.20.(금)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6기	250명	10.24.(화)~10.26.(목)
11월	고위직 과정(온라인)	14기	150명	11. 1.(수)
	승진자 과정(공무원)	9기	70명	11. 2.(목)
	전문과정 합격자 강의역량 향상과정	3기	30명	11.6.(월)~11.7.(화)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온라인)	10기	500명	11. 8.(수)
	신규자 과정(공무원)	10기	40명	11.21.(화)~11.22.(수)
	고위직 과정	15기	40명	11.23.(목)
	전문과정 합격자 강의시연평가	3차	30명	11.28.(화)~11.29.(수)
	청렴교육강사 보수교육	6기	70명	11.30.(목)
12월	승진자 과정(공직유관단체)	10기	70명	12. 1.(금)
	고위직 과정(온라인)	16기	150명	12. 5.(화)

① 신고창구에 대한 접근성·편리성 제공

➡ 이용자들이 손쉽게 신고창구를 찾을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치1) 누리집 메인화면에 “민원접수와 부패·공익신고”로 구분하고, 각각의 신고 항목을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치2) 신고내용, 신고자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게시판 형태”의 신고창구 운영 지양

< 신고창구 통합 방안 및 접근경로(예시) >



- ▶ (일반신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접수
예시) 생활불편(가로등 보수, 쓰레기 수거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공무원 단순 불친절 등
- ▶ (부패·공익신고)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
예시) 농지법·방위사업법 등 471개 공익신고 대상은 공익신고 창구로 연계

② 부패·공익신고 창구 운영 개선

➡ 법적근거, 신고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창구 운영

- **(조치1)**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신고 소개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패·공익신고* 사항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내 '신고하기'로 바로 연계
 - * 부패·공익신고,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신고,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국민신문고로 연계하지 않도록 유의)
 - ※ “게시판 형태의 신고창구 운영”으로 발생하는 신고제목, 신고자 정보 등 노출이 원천적 차단한 상태로 신고 가능
- **(조치2)** 기타 민원성* 신고 → '국민신문고' 등으로 연결
 - * 건의민원, 질의민원, 고충민원, 생활불편신고(가로등, 쓰레기 등), 기타 기관 자율운영 신고창구
- **(조치3)** 공공기관에서 신고창구 자체 운영이 어렵거나 청렴포털 개설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 배너를 등록하여 국민권익위에 신고토록 조치

③ 부패·공익신고는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신고토록 조치

➡ 신고자가 법률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명 신고가 원칙이며, 신고 기관에 직접 접수가 원칙

- **(조치1)** “익명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보상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창에 사전 안내 조치

< 안내문 예시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2)** “실명신고” 부패·공익신고는 신고자 보호·보상이 연계되므로 신고기관이 직접 접수·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민간 위탁 운영 지양

4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신고시스템 운영 철저

➡ 법률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유지를 위해 시스템을 보안관리 철저

- (조치1) 신고접수 과정에서 업체의 업무담당자 외 직원이 신고정보를 열람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업체 대상 신고자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조치2) 민간 위탁계약 종료 이후에도 업체에서 신고관련 정보가 누출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조치(자료 폐기 관리)
- (조치3) 시스템 운영 중 권한에 따른 접근 관리가 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항목에 대하여 기록이 관리되어야 함(6개월 이상 보관)
- (조치4) 시스템 취약으로 인해 신고자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보 보안 관리인증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고 주기적 사후관리 조치
 - ※ 용역사업 발주 계약 시 공고서 등에 용역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 누출금지 정보 등 관련법령 사항을 명시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 대상임을 사전 공지
- (조치5)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및 웹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조치 후 운영
 - ※ 사용자 패스워드 설정 시 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토록 관리
- (조치6)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신고자, 참고인 등의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를 추정 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관리 철저

5 최신 법령 등에 기반한 올바른 신고 정보 제공

➡ 현행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제도, 신고자 비밀보장, 보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공토록 조치

- (조치1) 홈페이지 콘텐츠를 최신의 것으로 수정·운영하여 신고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 공익신고 관련법령, 국민권익위원회 주소/명칭, 징역, 벌금 부과 금액, 보상금 상한액 및 하한액, 기존 운영지침 제공 등 오류 등 조치
- (조치2) 부패·공익신고는 청렴포털로 연결하고, 부패·공익 신고 관련 제도 등 소개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내 제도 소개 부분으로 가급적 연결(신고를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것은 유의) 조치

6 신고시스템 본인확인 시 고려사항

➡ 본인확인(실명, 신원확인, 로그인 등)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 신청 및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치1)** 신고 접수번호, 비밀번호를 이용한 조회방식은 신고자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크고 보안에 취약하므로, 본인확인서비스를 활용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 ※ 청렴포털 오프라인 신고도 등록하여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리 중
 - ※ 오프라인에서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게 관리
- **(조치2)** 본인 확인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이용시, 신고인이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 이외 1개 이상의 대체 인증수단을 함께 제공하도록 조치
 - ※ 본인확인 :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주민과 실명확인서비스 등
 - 본인인증(로그인) : ID/PWD, SMS, OTP, 생체인증, 디지털원패스 등

<공인인증서 운영방식>

방 식	특 징	비 고
아이디/ 패스워드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의 문자나 숫자로 이루어진 체계	패스워드 9자이상 (영문, 숫자, 특수 문자 포함)
IPIN	·아이핀은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확인번호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유출되어 도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전자상거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서 ·20년 12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기존의 공인인증서라는 말이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디지털원패스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간편인증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 없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 ·단, 간편인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 인증서 발급	
휴대폰본인확인	·본인 명의의 휴대폰인지와 해당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지 동시에 확인 가능 ·PASS, QR, PIN, 지문, 문자인증 등 방식 제공	
실명확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일치 여부를 확인	

7] 기관자체 운영 중인 민원창구에 부패·공익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

- 민원창구로 접수되었더라도 부패·공익신고 등 해당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적용됨
- 이에 업무 처리담당자에게 배정 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신고자 신분비밀 보호 등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스템 상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고지 조치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8] 기관 자체 신고처리시스템에 대한 신고자 보호 강화

➡ 원칙적으로 청렴포털 이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 자체 운영

- (조치1) 신고 조회, 접수 화면 등 인쇄버튼 클릭 시 개인정보는 원천적으로 인쇄되지 않도록 조치
- (조치2) 담당자 처리화면에 개인정보보호 주의사항 외에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률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 추가 안내

기대

임

□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요약표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①	2023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2~10월	전 공공기관
②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적용 및 적극 이행 협조	3월	전 공공기관
2.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근절 추진			
①	통합관리시스템 자료입력 철저	반기별	전 공공기관
②	후속점검 자료요청 적극 협조	필요시	해당 기관
③	취약분야 집중점검	연 1회	해당 기관
④	기관별 자체점검	연 2회	전 공공기관
⑤	컨설팅 적극 참여 요청	2분기	해당 지자체
3. 생활 속 규범으로 반부패 행위규범 내재화			
[1]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시행			
①	'22 실태조사 관련 시정 조치 통보 사항 이행	~6월	해당 기관
②	이해충돌방지법 의무 교육 이행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참석	6월(예정)	전 공공기관
④	자체 점검 등 이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 전개	연중	전 공공기관
⑤	법 위반행위 신고 사건 조사·처리 협조	연중	해당기관
⑥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조사 협조	9~12월	전 공공기관
⑦	제도운영 관련 개선 필요 사항 등 의견 공유	연중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2]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제고			
①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협조	2월~	전 공공기관
②	청탁금지제도 운영 설명회 참석	2, 10월	전 공공기관
③	법 바로 알리기 홍보자료 활용	수시	전 공공기관
④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홈페이지 활용 요청	수시	전 공공기관
[3]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내실화			
①	공직유관단체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 현황 등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 협조	상반기	공직유관단체 소관 감독기관
②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 제출	제·개정 완료시	전 공공기관
③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운영 지원 설명회 참석	3, 9월	해당 기관
④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 행동강령 실태점검시 자료 제출·현지점검 등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⑤	소속 공직자 대상 갑질 금지 등 행동강령 주요 행위기준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 적극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⑥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연중	전 공공기관
4. 법령·제도의 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1]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①	부패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사전 점검 등 협력체계 구축	2월~	해당 기관
②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실적) 제출	7월~	해당 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2]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①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조회 시 기한 내 제출	연중	전 공공기관
②	기관별 권고 이행현황 점검결과 및 이행지원 컨설팅 수요 제출	'23. 3월 예정	전 공공기관
③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업무 적극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5.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내실화			
①	비위면직자등 발생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철저	연중	전 공공기관
②	비위면직자등 명단 관리 및 자료제출 철저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채용공고시 비위면직자등 채용제한사유 명시	수시	전 공공기관
④	퇴직 전 공공기관 취업제한 여부 확인 당부	수시	전 공공기관
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교육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6.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도 향상 촉진			
①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공개실적 제출	~ 3월	평가 대상기관
②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의견제출	~ 3월	평가 대상기관
③	'23년도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 협조	하반기	평가 대상기관
④	'23년도 청렴컨설팅 멘토-멘티그룹 수요 신청	2.9.~16.	수요 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7.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공직사회 청렴역량 강화			
①	'22년도 부패방지교육 이행 실적 제출	~2월	전 공공기관
②	법정의무교육* 실시 및 참여 협조 * (규범별)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대상별) 고위직·승진자·신규자 등 대면교육 의무자	연중	전 공공기관
③	'22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 협조	4월~8월	해당기관
④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적극 참여 요청	연중	지방의회
⑤	기관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연수원 콘텐츠 활용	연중	전 기관
⑥	기관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교육강사 활용	연중	전 기관
8.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등 자율적 청렴활동 지원			
①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참여 및 우수사례 발굴	연 3회	전 공공기관
②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맞춤형 컨설팅 수요 제출	연중	해당 기관
9. 촘촘하고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 해설서 수요조사 응답	3월	해당 기관
②	신고자 보호 교육 수요조사 응답 및 교육 신청	반기별	해당 기관
③	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도 변경 시 홍보 협조	3월	해당 기관
④	신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금 적기 납부	수시	해당 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0. 부패행위 등 적발·처리의 실효성 강화			
①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연중	해당 기관
②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 홍보	수시	전 공공기관
③	부패·공익 등 신고사건 조사처리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수시	해당 기관
④	청렴포털 온라인 신고사건 관리 강화	수시	해당 기관
⑤	조사기관에 신고사건 이첩·송부 시, 소청·소송 등에 따른 실질적·최종적인 조사결과 제출 협조	수시	해당 기관
⑥	이첩·송부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시 협조	수시	해당 기관

□ 분야별 업무담당자

부서명	성명	업무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정책 총괄과	이병화	청렴컨설팅	044-200-7612	044)200-7939
	박중하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 이행 실적 점검 및 관리	044)200-7616	
청렴정책 총괄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팀)	김희리	법령정비, 실태조사 및 유권해석	044)200-7674	044)200-7939
	조수연	교육·홍보, 설명회 및 유권해석	044)200-7679	
	권나라	교육·홍보, 설명회 및 유권해석	044)200-7681	
	김종호	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 및 유권해석	044)200-7678	
청렴조사 평가과	김경용	종합청렴도 평가	044)200-7632	044)200-7940
	김일문		044)200-7633	
	이하윤		044)200-7635	
	연나영		044)200-7636	
	이지현		044)200-7637	
	황인준		044)200-7638	
	윤종선		044)200-7639	
부패영향 분석과	류종하	지방자치 법규 부패영향 평가	044)200-7664	044)200-7941
	윤태현		044)200-7659	
	김재현		044)200-7663	

부서명	성명	업무명	전화번호	팩스
청탁금지제도과	이준민	청탁금지제도 업무 총괄 및 유권해석	044)200-7703	044)200-7944
	권문택	청탁금지제도 운영 설명회 및 유권해석	044)200-7704	
	정나리	법 바로 알리기 홍보 및 유권해석	044)200-7708	
	김윤구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및 유권해석	044)200-7706	
	오정헌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및 유권해석	044)200-7707	
행동강령과	한세근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전수조사	044)200-7675	044)200-7942
	백소망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전수조사	044)200-7670	
	김경령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전수조사	044)200-7676	
	손상수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전수조사	044)200-7673	
채용비리 통합 신고센터	김종혁	공정채용 제도 기획·전수조사 총괄	044)200-7127	044)200-7964
	배영준	공정채용 제도 기획·전수조사 지원	044)200-7711	
민간협력 담당관실	박세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044)200-7167	044)200-7917
심사기획과	방경아	부패신고 제도 운영·기획	044)200-7694	044)200-7943
	김남행	청렴포털 운영·관리	044)200-7689	
	이태완	청렴포털 운영·관리	044)200-7698	
	한명진	이첩사건 사후관리	044)200-7697	
	우은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200-7690	
	한수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200-7696	

부서명	성명	업무명	전화번호	팩스
공공재정 환수제도과	박종혁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044)200-7642	044)200- 7690
	서현우	이행실태점검·시스템 총괄	044)200-7644	
	김시형	컨설팅, 교육·홍보 총괄	044)200-7643	
	정혜정	교육·홍보	044)200-7645	
	임성순	이행실태 점검, 시스템 운영	044)200-7647	
	김선일	후속점검, 취약분야 점검	044)200-7650	
	김시준	서무	044)200-7646	
보호보상 정책과	김회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공익신고 제도운영	044)200-7752	044)200- 7948
	김인희	신고자 보호 교육,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협의회 운영, 법 해설서 제작	044)200-7757	
	이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044)200-7755	
신고자 보상과	김채연	신고 보상금 상환	044)200-7740	044)200- 7947
제도개선 총괄과	김종희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044)200-7219	044)200- 7921
	이동식		044)200-7224	
청렴연수원	최길호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운영	043)901-6116	044)200- 7973
	김준형		043)901-6118	
	김명혜	이러닝 운영, 고충처리 역량강화 과정 운영	043)901-6121	
	백인혁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 관련	043)901-6113	
	유용원	청렴교육 콘텐츠	043)901-6136	
	윤소영	청렴교육 강사관리, 교육운영	043)901-6142	